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당일 임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사대금 지급구조 상 임금 지급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임금을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선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## 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,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선지급한 때에는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청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
1.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청구 동의서
2.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임금 선지급 내역
3. 선지급한 근로자 임금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몫

제12조제7항에 “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” 다음에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.

다만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사대금의 청구) ① ~ ⑥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공사대금의 청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선지급한 때에는 해당 임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청구 동의서</li> <li>2.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임금 선지급 내역</li> <li>3. 선지급한 근로자 임금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몫</li> </ol>
<p>제12조(공사대금의 지급) 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</p>	<p>제12조(공사대금의 지급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</p>

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
⑧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다만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.

⑧ (현행과 같음)